

## 〈七十生男非吾子〉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노영근\*

〈차례〉

1. 서론
2. 이야기의 형성과 변이
3. 각편집도
4. 구조적 특성
5. 상속에 담긴 의미
6. 결론

### 〈국문초록〉

〈七十生男非吾子〉 이야기는 조사된 자료숫자는 적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아직 독립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어떠한 욕망이 이 이야기에 내재하고 있는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고는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의 서사구조와 서사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는 妾가 재판으로 재산을 되찾는 내용으로, 중국문헌인 『의옥집』→『절옥귀감』→『지낭』의 과정을 거쳐 우리 문헌인 『목민심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구전되면서 이야기를 형성하였다. 이 이야기의 공통 서사는 1. 늙은 아버지가 妾에게 유산을 전하고 싶다. 2. 사위를 속여 유산을 지키게 한다. 3. 아들이 성장한 후 제기된 소송을 관원(또는 아들)이 슬기롭게 해결해서 유산이 아들에게 전해진다. 이는 사기담 구조를 그대로 따르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주체에서 차이가 난다. 주체의 차이로 인해 수사담의 구조가 결합한다. 속임과 수사가 공존하는 것이 이 이야기 구조의 특징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후계자이다. 후계자는 혈통과 능력을 모두 갖춘 자와 단순히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혈통을 잇는 자로 나타난다. 혈통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친자만을 중시하는 관념을 볼 수 있다. 또한 妾子가 속임의 수혜자이다.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상속이므로, 첩자는 아버지의 대리인이 된다.

□ 칠십생남비오자, 사기, 사기꾼, 트릭, 트릭스터, 범인찾기, 유산, 상속, 첩자, 사위

## 1. 서론

구두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그 숫자를 헤아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하다. 각편의 숫자는 방대하지만 그 내용으로 추려본다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갈래지을만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욕망을 해소하며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욕망과 관련되는가에 따라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어 다양한 지역에서 상당한 숫자로 전승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우리가 전자에 관심을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숫자가 적거나, 전승범위가 제한적인 이야기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그 내면을 면밀히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은 자명할 것이다.

인간의 초월적 욕망에 기반하고 있고 전승범위는 전국적이나 조사된 자료 숫자는 적어서 우리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七十生男非吾子>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7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파격적인 상황에서 출발한다. 향유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큼 서사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전승되는

실상은 그렇게 많은 각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포는 전국적이다. 이야기를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하겠다.

이 이야기에 관해서 아직 독립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학치료와 관련한 하은하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은하는 이 유형을 자녀밀치기서사로 규정하였다.<sup>1)</sup> 이야기의 향유자가 자녀밀치기서사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할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가 이뤄놓은 세계를 온전히 이어받아 유지할지 여부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본 것이다. 본격적인 유형론적 연구가 아니고 부모서사를 진단하는 검사항목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기에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충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밀치기’로 규정했다는 것은 작품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밀치기 서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 가르기로 연결되는 것’<sup>2)</sup>이기 때문이다. 즉,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는 아들이 자격이 갖추졌거나 그렇다고 전제하고 자신의 재산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 짜여지고 시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연구가 미진하다보니 이 이야기는 아직 정확하게 그 성격도 규명되지 않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작품을 분류한 이인경에 따르면 현재 두 가지로 이 이야기는 유형분류가 되고 있다. 智慧譚 중에서 兒智譚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명당·풍수지리담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자료는 전자에 속하나 한 편만 후자로 분류하고 있다.<sup>3)</sup> 이야기의 실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성격규정과 이야기의 구조적, 서사적 의미 등 전반적인

---

1) 하은하, 『부모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문학치료연구> 1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244쪽.  
2)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266쪽.  
3)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저간의 사정을 바탕으로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서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살펴보려한다.

## 2. 이야기의 형성과 변이

어떠한 사건이든 명석하게 판결하여 억울한 사정이 없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목민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중 상속을 둘러싸고 발생한 난해한 소송을 명석하게 판결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첩자(妾子)와 적녀(嫡女)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과 모든 이야기가 첩자가 승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역사상 문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옥집(疑獄集)』 권(券) 상(上)에 실려있는 <老生無影><sup>4)</sup>이다. 10세기 경의 저작인 『의옥집』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기상 가장 앞선 것이다. 『의옥집』은 화영이 시작하여 그의 아들 화몽이 완성한 것으로 그 저작시기는 984년 전후로 추정한다.<sup>5)</sup> 지금보다 1100여 년을 앞 선 것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야기임을 할 수 있다.

내용은 본처소생인 딸이 후처소생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 하기 위해서 첩자가 친자가 아니라고 誣告했으나 관원의 실증으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다.<sup>6)</sup> 여기서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4) 이 이야기의 제목이 조선에서 간행한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본에는 <老子無影>으로 되어 있으나, 楊奉琨이 校釋한 『疑獄集 折獄龜鑑 校釋』(復旦大學, 1988)에는 <丙吉辨影>으로 되어있다. 본고에서는 좀 더 원본에 가까울 것으로 여겨지는 조선시대 간행자료의 제목을 따랐다.

5) 楊奉琨, 위의 책, 前言(I쪽) 참조.

하는 것은 관원의 지식이다. 사건의 쟁점은 첩자와 죽은 아버지와의 친자 여부이다. 그런데 이를 가려낼 객관적인 방법이 없었기에 적녀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것이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관원의 지식이다. ‘노인이 낳은 아이는 추위에 약하고, 그림자가 없다’는 관원의 지식은 관원이 갖고 있는 권위로 인하여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 수단이 된다. 그리고 첩자가 관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혈연관계를 증명받게 된다.

이 내용은 그대로 송나라 때 정극이 지은 『折獄龜鑑』에 기록된다. 어느 문헌이나 이 이야기의 출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의옥집』은 고려 때 이미 번역되어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sup>7)</sup> 따라서 『의옥

6) 郇吉 字少卿 漢宣帝時 陣留有一老人 年八十餘 家富而無子 祇有一女已適人 其妻已卒 翁又娶一妻 後生一子 後翁死 其妻育其子數年 前妻女欲奪財物 乃誣後母所生非我父之子 郡縣不能斷 聞於臺省 吉爲遷尉 乃曰 吾聞 老人之子 不耐寒 日中無影 時八月中 取同歲小兒 均衣單衣 諸小兒不寒 唯老人之子變色 又令 與諸兒立於日中 唯老人之子無影 遂斷 財物歸於後母之子 前妻女受誣母之罪.  
 (『의옥집』, 권상,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본고에서는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 사이트<http://kostma.korea.ac.kr>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다. 띄어쓰기 필자.)

7) 고려와 조선의 역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안서도호부사 도관원외랑(安西都護府使 都官員外郎) 이선정(異善貞) 등이 새로 조성(雕成)한 『주후방(肘後方)』 73판(板), 『의옥집(疑獄集)』 11판, 『천옥집(川玉集)』 10판을 바쳤다. 지경산부사 전중내급사(知京山府事 殿中內給事) 이성미(李成美)가 새로 조성한 『수서(隋書)』 680판을 바쳤다. 왕이 조서를 내려 비서각(秘書閣)에 비치하게 하고, 각각 의복을 하사하였다.<이선정 등이 새로 새긴 목판을 바치다>(『고려사』 世家 卷第八 文宗 13年(1059년) 2월)

성건이 또 아뢰기를,

“신(臣)이 수령(守令)들의 청옥(聽獄)하는 것을 보니, 실정(實情)을 얻는 것만 일삼아서 반드시 먼저 엄형(嚴刑)으로써 신문(訊問)하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위제(威制)에 겁을 먹고 무복(誣服)하지 않음이 드문 형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청옥(聽獄)하는 관리가 반드시 평서(平恕)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거의 그 실정을 얻어서 옥사를 무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기니, 만일 <당음비사(棠陰比事)>나 <의옥집(疑獄集)> 등의 책을 발간하여 주현(州縣)에 배포해서 수령(守令)들로 하여금 늘 이것을 읽게

집』에 실린 이야기들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전되는 이야기로 <노생무영>과 동일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노생무영> 이야기는 『의욕집』과 『절옥귀감』을 거쳐 명나라 때 馮夢龍에 의해 화본소설로 개작되어 중국 내에서 소설로 유통된다. 풍몽룡이 지은 『諭世明言』 권10에 실려있는 <滕大尹鬼斷家私>이 그것이다.<sup>8)</sup> 그리고 풍몽룡의 <滕大尹鬼斷家私>는 우리나라에서 신소설 『행락도』(閔濬鎬, 東洋書院, 明治45년, 1912년)로 번안되어 유통된다.<sup>9)</sup> <노자무영> 이야기는 고려시대에 이미 전해졌으나 구전되지는 못하고,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또다른 경로인 번안소설 형태로 유통된다. 애초에 전해진 이야기가 구전되지 않고 그 전승이 끊어지고, 동일한 이야기가 후대에 또다른 문헌으로 유통되는 특이한 사례라고 하겠다.

또 다른 이야기로 馮夢龍의 『智囊』에 실려있는 <某巡官> 이야기가 있다.<sup>10)</sup> 『疑獄集』과 『折獄龜鑑』에 있는 기록을 풍몽룡이 『지낭』을 편찬

---

한다면 혹 측달(惻怛)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어 위형(威刑)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됨에 달렸을 뿐이요, 글[書]을 봄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만약 반행(頒行)한다면 거의 혹 보익(補益)됨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간행(刊行)하도록 하라.” <성건이 경상도의 조세가 충주에서 노적된 뒤의 문제와 수령들의 욕사 등을 말하다>(『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24일(갑신))(db.history.go.kr)

이와 『疑獄集』의 서지와 번역양상 등에 관한 것은 오용섭(조선전기 간행의 『의욕집』, <서지학연구> 36집, 서지학회, 2007.)의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된다.

- 8) <滕大尹鬼斷家私>의 서사적인 특징과 이후의 서사 전승에 관해서는 한혜경의 연구(『<滕大尹鬼斷家私>의 서사기법』, 『중국어문논총』 47집, 2010, 301쪽~323쪽)와 胡士瑩의 『話本小說概論(上冊)』(北京:中華書局, 1980) 참조.
- 9) 번안양상을 비롯한 『행락도』에 관해서는 이혜순의 『신소설 『행락도』 연구』(『국어국문학』 84집, 국어국문학회, 1980, 102쪽~119쪽) 참조.
- 10) 有個張老富翁，妻子生一個女兒 沒有兒子，招贅某甲人家門。 後來，張老富翁的 姨太太生一個兒子，名一飛，一飛四歲時，張老去世。張老生病時，曾對女婿說：

하면서 포함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疑獄集』에 이 이야기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아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전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의옥집』 편찬 당시에 이미 상당히 알려진 이야기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10세기 이전의 것임은 자명하다.

풍몽룡은 이 이야기를 진실이 드러나는(得情) 이야기로 분류하였다. 그는 『智囊』을 편찬하며智의 종류를 열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智를 상지, 일반지, 잡지로 구분하여 차등지우고 있다. 상지는 여러번 반복되며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sup>11)</sup> 이 중 ‘살피는 지혜(察智)’는 상지 중의 하나로 명석한 통찰을 지혜의 기초로 해야 실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sup>12)</sup> 그러면서 得情과 詰奸으로 구분하고 得情에 해당하는 예화 42개를 기록하였다.<sup>13)</sup> 이 중 41개 예화는 모두 시대와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逸話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사실성이 강한 또는 강조된 이야기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서 <某巡官이야기>는 인물과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다른 이야기에 비해 민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득정편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관원이 사건의 실상을 잘 파악해서 잘잘못을

---

“姨太太的兒子不够資格繼承我的家產，應該給你們夫婦，你只要養他們母子，不使他們流離失所，就是你的陰德了。”于是拿出契券寫上：“張一非吾子也家財盡與吾婿外人不得爭奪。”女婿毫不懷疑地擁有張家的產業。後來張一飛長大了，向官府控告要求分家產，女婿以契券爲証，官府因而不問。後來奉命出巡的官吏來到，張一飛又去控告，女婿還是拿着契券應訊。這位官吏就更改斷句的讀法說：“張一飛，吾子也，家財盡與。吾婿外人，不得爭奪。”又說：“你岳父明明說你是外人，你還敢擁有他的產業嗎？將飛寫作非，是怕他兒子幼少會被你傷害而已。”于是判斷將產業給姨太太的兒子，衆人都叫好。(馮夢龍, 『智囊』, 馬松源 主編, 『馮夢龍全書』卷4, 北京:中國戲劇出版社, 2009, 232~233쪽.)

11) 房厚信, 馮夢龍<智囊>編纂體例探析, 安慶師範學院學報, 31卷 1期, 2012, 36쪽.

12) 馮夢龍(2009), 앞의 책, 216쪽.

13) 詰奸에 해당하는 예화는 55개이다. 馮夢龍(2009), 위의 책, 240~275쪽.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내용이다. 사실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민담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즉, 백성들의 삶에서 상속이라는 중요한 행위에 대한 것이기에 사실성이 약해도 포함시켰다고 하겠다.

<某巡官> 이야기는 첩자와 적녀가 유산을 다투는 점, 분쟁의 판건은 유서의 해석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와 동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疑獄集』에 실린 것이 『折獄龜鑑』을 거쳐 『智囊』에 수록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疑獄集』과 『智囊』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와 조선에서 출간되어 널리 읽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두 책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의옥집』은 중국에서도 원본이 사라졌고, 고려나 조선에서도 인쇄하여 보급했다는 것 외에 관련 내용이 다른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낭』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낭』에 실린 <모순관> 이야기는 정약용의 『牧民心書』에 내용 변화없이 그대로 轉載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원이 갖춰야 할 자세 중 소송에 관한 내용에서 <골육(骨肉) 간에 서로 다투어 의리를 잊고 재물을 탐내는 자는 징계하기를 엄히 해야 한다.骨肉之爭。忘義殉財者。懲之宜嚴><sup>14)</sup>며 이 이야기를 예

14) 부민(富民) 장씨(張氏)가 늙어서 아들이 없고 자기 집에 사위를 살게 하였다. 후에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일비(一飛)라 하였다. 그 나이 4살에 장씨가 죽었다. 장씨가 병이 들자 사위에게 이르기를 『첩의 자식에게는 내 재산을 맡길 수가 없으니 마땅히 너의 부부에게 주어야겠다. 다만 저 모자를 부양하여 시궁창에서 죽지는 않도록 해준다면 곧 음덕(陰德)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는 이에 종이를 내어 쓰기를 『장일비오자야가재진여오서외인부득쟁탈(張一非吾子也家財盡與吾壻外人不得爭奪)』이라고 하였다. 사위는 이에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의심치 않았다. 뒤에 첩의 아들이 장성해져서 관에 고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기를 요구하였다. 사위가 그 문권을 제시하니 관은 드디어 불문에 붙여버렸다. 후일에 어느 어사(御史)가 지나가자 첩의

화로 소개하고 있다.

<모순관>의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인명 등을 제거하면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이 된다. 따라서 『疑獄集』→『折獄龜鑑』→『智囊』→『牧民心書』로 기록이 전승되고, 중국문헌 기록이 조선에 전해져 문헌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민간에 구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즉, 현재 구전으로 전하는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는 <某巡官> 이야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 민간의 구전이야기→중국 문헌기록→조선 문헌기록→조선 민간의 구전이야기의 과정을 거쳐서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호에 맞게 이야기가 변형되고, 다양한 각편이 형성되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다양한 각편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는지 살펴서 수용과정에서 어떠한 변이가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3. 각편검토

<七十生男非吾子> 유형은 고령에 첩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트릭을 사용하고, 고을원이 트릭을 드러내 진

---

아들은 다시 고소하였는데 사위는 그 전대로 나아가 증거를 내보였다. 어사는 그 귀절을 고쳐 읽기를 『장일비는 내아들이니 가재를 모두 준다. 내 사위는 외인이니 쟁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너의 장인이 분명히 내 사위는 외인이라고 하였는데 네가 아직도 감히 그 가업을 차지하고 있느냐. 일비(一飛)를 일비(一非)로 고쳐 쓴 것은 그가 어리므로 너에게 해침을 당할까 봐 염려했던 때문이다.』하고 이에 판결하여 재산을 첩의 아들에게 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쾌하게 여겼다.(정약용, 장순법역, 『목민심서』 형전(刑典) 육조(六條) 제1조 청송(聽訟) 上,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88A\_0100\_020\_0080, 2018.9.29.검색).

실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줄거리다. 이러한 줄거리로 이뤄진 각편은 현재까지 모두 7편<sup>15)</sup>이 조사되었다.<sup>16)</sup> 각편 숫자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충청남북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한 편씩 분포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의 각편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한 편도 없다는 특징도 보인다. 특히 자료3.은 유산을 두고 적녀와 양자가 다투는 요소 외에는 다른 각편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내용에 따라서 자료3.과 이외의 자료로 양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지역적으로 다양한만큼 이야기의 변화 역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15) 이 숫자는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와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7~1993)에 실려있는 것에 한정된 것이다. 이 두 자료집은 전국 규모로 진행된 조사성격을 수록하였으므로 우리 구비문학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두 자료집에 실린 각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형의 전반적인 면모를 보이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6)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칠십생남비오자』 『대계』 1-1 서울 도봉구 수유동 31, 298~302쪽.
2. 『유산 찾아 준 원님』 『대계』 1-6 경기 안성군 이죽면 43, 780~782쪽.
3. 『아버지의 유언(井上子齋 井下女齋)』 『대계』 2-9 강원 영월군 주천면 22, 812~813쪽.
4. 『70세에 낳은 아들』 『대계』 5-5 전북 정주시 21, 104~107쪽.
5. 『칠십에 생남자』 『대계』 7-3 경북 경주시 안강읍 61, 420~424쪽.
6. 『박만석(朴萬錫) 감사, 유산 찾아 주다』 『대계』 8-4 경남 진양군 대곡면 6, 39~41쪽.
7. 『七十生男非吾子』,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전라남도), 평민사, 1999, 125쪽.

17) 자료가 한 편 뿐이어서 이야기의 줄기로 가능할까는 의문이다. 그러나 김지수가 번역한 『절육귀감』(소명출판, 2012)의 <병길(丙吉)이 유산 침탈을 재판하다>편의 평석 부분에 두 이야기를 합친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번역자인 김지수가 고등학교 은사인 박시중선생께 들었다는 것으로 유서의 내용 뿐 아니라 이야기의 구성요소가 모두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3.이 단순한 異形資料가 아니라 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다만, 평석부분의 내용은 구원물이 아니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므로 자료로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 변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결합이 강력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이야기를 구성하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중 변하는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구성상의 특징은 이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각 자료들의 이야기 구성을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단락 1. 고령 남성이 득남한다.

이 이야기는 결핍상황에서 시작한다. 고령의 남성이 아들이 없는 상황이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父에서子로 이어지는家父長權의 계승자가 없다는 것으로 이는 가문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문의 단절은 그동안 이어지던 모든 업적의 소멸을 가져오는 사회적인 죽음이라 하겠다. 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後嗣를 두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즉, 후사가 있음으로써 가문은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후사를 두는 것은 부친 세대의 의무인 것이다. 문제는 남성이 고령이고, 배우자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후사를 이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극단적인 위기상황은 첩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해결된다. 妾子가 생겨 후사를 이을 수 있게 되어 첫 번째 결핍상황은 해소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료3을 제외하고 모든 자료에 공통적이다. 자료3은 妾子가 養子로 설정되어 최초의 문제상황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妾子가 後嗣가 되는 것은 嫡女와의 갈등을 내포하는 불완전한 해결책이다. 첩자가 태어났을 때 적녀는 이미 결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적녀가 첩자에 비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첩자는 적녀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여성이라는 결점을 갖는

적녀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남성이라는 장점을 갖는 첩자가 위태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첫번째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나이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최초의 결핍상황은 현격한 나이 차를 내포하면서 불완전하게 해소되어 새로운 갈등을 약기하는 서사의 발단구실을 하고 있다.

## 단락 2. 아들에게 상속할 수 없다.

첫 번째 결핍해소는嫡女인 딸과 첩자가 병존하는 상황을 가져와서 새로운 결핍상황을 만들어낸다.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의 사천(私賤) ‘상속원칙’에 의하면

아직 나누어 갖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존 여부를 막론하고 분급한다. 본인이 죽었을 때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분배해야 할 노비 수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자녀(嫡子女)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만약 남는 수효가 있으면 먼저 승중자(承重子)에게 주고, 또 남는 수효가 있으면 나이순으로 분급한다. 적처(嫡妻)에게 자녀가 없으면 양첩자녀(良妾子女)에게, 양첩자녀가 없으면 천첩자녀(賤妾子女)에게 동일하게 준다. 전지(田地)의 경우에도 똑같다.<sup>18)</sup>

라고 하여서 적자녀가 없을 경우에 첩자녀는 적자녀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또한 승중자의 자격도 적장자가 원칙이나 “적장자(嫡長子)가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제사를 받들고, 중자도 후사가 없으면 첩의 아들이 제사를 받든다”<sup>19)</sup>라고 하여서 조선에서는 적자가 없을 경우에 양자

18) 未分奴婢，勿論子女存沒分給。身沒無子孫者，不在此限。未滿分數者，均給嫡子女。若有餘數，先給承重子，又有餘，則以長幼次序給之。嫡無子女，則良妾子女，無良妾子女，則賤妾子女同。田地同。(http://db.history.go.kr/id/jlaw\_305\_0240\_0010)

를 하지 않으면 첩의 자식도 承重子가 될 수 있으며, 이로써 대를 잇는 것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條目的 ‘개별상속분’에 의하면

부모의 노비는 다음과 같이 준다. 승중자(承重子)에게 5분의 1을 더 준다. 예를 들면 중자녀(衆子女)에게 각각 5명씩 주는 경우, 승중자에게는 6명을 주는 따위이다. 중자녀(衆子女)에게는 똑같이 나누어 준다. 양첩자녀(良妾子女)에게는 7분의 1을 준다. 예를 들면 적자녀(嫡子女)에게 각각 6명씩 주는 경우, 양첩자녀에게 각각 1명씩을 주는 따위이다. 아래의 경우에도 똑같다. ○ 적모(嫡母)의 노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천첩자녀의 경우에도 똑같다. 천첩자녀(賤妾子女)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sup>20)</sup>

라고 하여 적자녀가 있을 경우에 첩자녀는 상속에서 차별을 받는다. 따라서 <칠십생남비오자> 유형에서는 적녀가 있는 상황이므로 아들에게 유산을 모두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법률에 따르면 딸에 비해서 1/7밖에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욕망이 이뤄질 수 없는 결핍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각편에 공통적이다. 다만, 자료3에서는 딸이 적극적으로 우물 아래에 있는 좋은 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각편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즉, 두 번째 문제상황인 아버지와 딸의 대결이 자료3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반면에 다른 자료들에서는 아버지 혼자만의 문제로 간접적이다.

19) 若嫡長子無後，則衆子，衆子無後，則妾子奉祀。(http://db.history.go.kr/id/jlawa\_303\_0150\_0020)

20) 父母奴婢。承重子，加五分之一。如衆子女各給五口·承重子給六口之類。衆子女，平分。良妾子女，七分之一。如嫡子女各給六口·良妾子女各給一口之類。下同。○ 嫡母奴婢，則否。賤妾子女同。賤妾子女，十分之一。(http://db.history.go.kr/id/jlawa\_305\_0240\_0020\_0010)

### 단락 3. 유서를 작성한다.

이 상황은 아버지가 이중적으로 해석되도록 유서를 작성함으로써 해소된다. 즉, 아버지는 유서를 이용하는 트릭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부정하고 사위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도록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는 사위를 불러서 구두로 이러한 내용을 알려준다. 그 후에 유서를 작성해서 유서내용의 해석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상황 역시 불완전하게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사위에게 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을 인식시킴으로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사적인 긴장을 더욱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유서의 내용은 ‘칠십생남비오자(七十生男非吾子). 가장지물부지서군외인물론(家藏之物付之婿君外人勿論)’으로 자료 1, 5, 6, 7이 대동소이하다. 사위는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으므로 이 문장을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유언에 충실하게 행동한다.

자료2, 3, 4에서는 유서의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자료2는 다른 이야기 없이 ‘잘 길러서 세간 내보낼 적 아무 것두 주지 말구 지필 한 벌만 사주’도록 한다. 장인은 사위에게 잘 길러서 독립시켜라와 지필 한 벌을 주어라는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사위는 아들을 키우기는 하지만 성장한 후에는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는다. 자료3은 사위가 등장하지 않고 딸이 좋은 논을 유산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걱정말어라. 내가 다 해 놓고 죽을 테니”라며 애매한 약속을 한다. 딸로서는 아버지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위가 장인의 말을 믿는 것과 딸이 아버지의 말을 믿는 것은 결국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의도대로 사위 또는 딸이 생각함으로써 아버지의 트릭

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자료4는 재산과 관련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유서의 내용은 애매한 문장이 아니라 ‘칠십 이상 넘은이 이 비오자(非吾子)’라고 해서 명확하게 첩자(妾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딸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상속권을 부당당한 상황에서 첩자인 아들은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상속자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유서의 내용이 다른 자료에 비해 명백하게 이해되게 설정함으로써 이 자료의 트릭은 좀 더 극적이라고 하겠다.

#### 단락 4. 유서의 진실이 드러난다.

위기상황을 모면하면서 덮었던 진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결정적인 계기는 첩자의 성장이다. 최초의 결핍상황에 이어지는 불완전한 해결의 요인이었던 나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즉, 나이도 어리고, 육체적으로도 약한 미성숙 상태였기에 사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첩자가 성숙하게 되면서 세력관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첩자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작성한 유서가 만들어 놓은 불안한 균형상태는 깨지게 되는 것이다. 첩자가 자각하는 계기가 자료 2와 4, 5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다. 자료2는 첩자가 성장한 후에 지필묵 한 벌을 사주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매부가 지키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이다. 자료 4는 적녀와 양자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자각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자료 5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sup>21)</sup>이

21) “이 살림은 너거 살림이다. 너거 살림인데, 너거 어른이 죽을 때, 이 살림으로 너거 자형한테 땀졌다. 그리이, 지금은 인제 니 살림인데, 니도 인제 그만큼 장성했이어 살림을 찾아라.”(『대계』 7-3, 422쪽.)

첩자의 자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개별적으로 몇몇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 사건 전개의 전환점 구실을 하고 있다. 즉, 최초에는 절대적으로 열등했던 첩자가 적녀와 맞설 수 있게 성장한 것이다. 최초의 대립관계가 성장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로 전환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전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는 진실이 드러나며 만들어진다.

아버지가 설정한 트릭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자료1과 4를 제외하고 모두 관원이다. 이때 눈에 띄는 것은 자료 1과 3, 7은 기존의 관원이지만 자료2, 5, 6은 새로운 관원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자료1에서는 아들이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관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때 관원이 아들의 해석을 승인하는 이유는 “그만 해든 니 애비 재산을 지킬만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혈연이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자료들과 이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른 자료들이 혈연만으로 가계의 승계를 승인하는데 비해 자료1에서는 그에 걸맞는 능력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4는 문제의 해결자가 관원이 아닌 관원의 딸이라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관원의 딸이 병풍그림의 모양을 근거로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관원의 딸은 딸그대로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병풍 그림에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서 속에 숨어있던 문장인 ‘칠십이 생남했으니 비오자이오’를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자료들이 판결이 강조된 방법이라면 자료4는 아이의 지혜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 없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만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다른 자료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단락 5.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는다.

이야기는 결국 妾子인 아들이 유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상쾌하게 여긴다.’ 서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妾子에게 상속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이야기는 결국 妾子인 아들이 유산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각편별로 서로 상이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늙은 아버지, 첩의 아들, 사위, 관원 또는 관원의 딸이 유산을 둘러싸고 벌이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조작된 유서에 의해 촉발되는 동시에 해결되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 4. 구조적 특성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각편들은 문제(단락 1,2)-불안한 해결(단락3)-완전한 해결(단락4,5)의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는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된 서사단락을 갖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늙은 아버지가 獨子인 첩의 아들에게 유산을 전하고 싶다.
2. 사위에게 조작된 유서를 주어 사위가 유산을 지키게 한다.
3. 아들이 성장한 후 제기된 소송을 관원(또는 아들)이 슬기롭게 해결해서 유산이 아들에게 전해진다.

전체 이야기를 추동하는 주체는 늙은 아버지다. 늙은 아버지에게는 첩

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유산의 완전한 계승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있는 것이다. 이 욕망을 충족하는 데 적녀와 사위가 방해요소가 된다. 재산의 상당부분을 적녀에게 분할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첩자에게 주어질 몫이 온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첩자의 나이가 서너 살에 불과한 유아단계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는 적녀리는 방해요소로 인하여 첩자의 안전과 유산의 계승 모두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다. 늙은 아버지는 이 방해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선택한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생존의 권위에 기대어 유언을 하는 것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속임이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적인 맥락에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속임의 주동자는 대상에 대해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늙은 아버지도 자신의 욕망성취 여부가 적녀와 사위에게 좌우되므로 약자의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속임은 주동자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지식, 즉 대상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동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대상은 주동자의 의도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동자가 속임을 행하는 순간 최초의 관계는 역전된다. 이 사실을 대상만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속임의 이야기가 갖는 서사적인 재미는 여기에 있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한 사람만 모르는 코메디의 웃음원리와 동일한 것이다. 주동자는 사건의 표면적인 전개와 다른 이면의 전개를 만들어내어 대상을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늙은 아버지는 유서를 중의적으로 작성함으로써 張一, 非 吾子也. 家産盡與 吾婿, 外人不得爭奪.(적녀와 사위의 관점, 표면적 전개) 속에 張一非, 吾子也, 家産盡與. 吾婿外人, 不得爭奪.(장인의 관점, 이면적 전개)가 내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사실을 늙은 아버지와 구연자와 청중은 알고 있지만, 적녀와 사위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향유자들은 유언의 해석방식에 주의를 집중한다. 즉, 이야기의 구연자들은 사건의 해결과 관련해서 한문해석이 현토에 따라 달라지는 원리가 핵심임을 강조<sup>22)</sup>하고 있으며, 이야기의 절정(punch-line)은 이 원리가 드러나는 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상황은 적녀와 사위의 관점에서 진행함으로써 속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전개가 가능한 것은 늙은 아버지는 속임의 주동자가 갖춰야 할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속임의 이야기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언어의 이중성이다. 속임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상의 것을 실재한다고 믿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모두 언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속임은 곧 언어의 이중적 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다른 의미파악을 하는 데 속임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속임의 주체는 대상에게 한 가지만 생각<sup>23)</sup>하도록 의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용법과는 다른 자신만의 의미가 통하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다.<sup>24)</sup> 늙은 아버지 역시 사위에게 재산을 말

---

22) 글자는 고대로 봐 두고 글자만 웃토로 붙, 우이로 붙이고 밀이로 붙이서, 토 다는데 달린 거이라 말야.(대계1-1)

그것도 가능한 것이었쥬. 토 달기에 달렸으니까.(『대계』 2-9)

내나(알듯이) 그 글에, 그 글에, 토만 따악 다시 달아 뻘께네 달라져.(『대계』 8-4)

요건 토 붙이기그당. 처음에는, ‘칠십에 생남자하니 비오재라.’ 이거 내 자식이 아이라. ‘가정지물을 전서하노니 타인은 불설’했지마는 요변에는 어찌 되느고 하며 그 토 달아논 거, ‘칠십에 생남잔들, [강조하여]들, 비오재리오,’ 내 자식이 아이리오. ‘가정지물을 전하노니 서는 타인이라’ 사위는 다른 사람이라 말이지. ‘불설하라.’(『대계』 7-3)

23)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60쪽.

24) 임주영,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트릭서사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31쪽.

긴다는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사위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서 내용을 해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유서 내용 속에 자신만의 의미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늙은 아버지는 속임의 핵심적인 수법을 구사하며 속임의 주동자로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장인이라는 발화자의 권위 역시 속임이 원활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장인이 하는 말하기에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떠한 말로 속임을 시도했을 때 그 말은 대상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때 믿음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하는 말인가이다. 말을 할 만한 사람이 하는가 아닌가 여부, 즉 발화자의 권위는 믿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때 권위는 사회적인 지위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상황문맥에 적합한 인물이 권위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속임 이야기의 대표적인 주인공 중 하나인 양글장글대가 상전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권위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전이 보낸 것이라며 조작된 편지를 전달했을 때 그 편지가 집안 식구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그것이 양글장글대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양글장글대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문맥에 적합한 인물은 권위를 갖는 것이다. 사위가 장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 역시 재산의 소유자가 장인이기 때문이다.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를 이전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므로 그 말의 권위는 충분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속임의 이야기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속임의 주동자이다. 그런데 <칠십생남비오자>에서 주동자는 속임을 설정만하고 자신은 죽어버린다. 표면적 전개를 무력화시킬 이면을 폭로할 주동자가 없어졌다는데 이 이야기의 특징이 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구조가 다른 속임의 이야기와 달라지는 것이다. 속임의 진실을 폭로하는 역할은 관원에게 주

어진다. 관원은 속임을 구성한 인물이 아니다. 속임이 만들어놓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이 부분은 속임의 이야기가 아닌 명판결담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관원은 새로운 임지에 부임하자 난해한 소송에 직면한다. 전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소송이고 판결도 한결같았던 소송이다. 그런데 원고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성의 억울함을 잘 살펴야 하는 목민관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다는 데 관원의 고민이 있다. 속임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존의 판단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원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의 핵심은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근본적인 출발점에 대한 재확인이었다. 그리고 관원은 유서를 새롭게 해석해서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낸다. 장인의 관점으로 상황이 새롭게 정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원의 해결방법은 명판 이야기 중 범인찾는 이야기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최초의 상황 또는 해석은 범인이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 놓은 것이다. 즉, 범인은 속임의 주동자인 것이고, 최초의 상황은 범인을 은닉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끄는 것이다. 이 속임수를 간파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관원의 일이다. 이러한 관원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전개된 지역의 새로운 인물이다.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의 것을 해석해야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인찾는 이야기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다면<sup>25)</sup>,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에서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야기와 차이를 보인다. 즉, 문장해석의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이로써 속임의 진실이 드러나

25) 이성희, 「간부잡은 원님」,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2, 33쪽.

고 상황은 정상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의 전체 구성은 단락1과 단락2에서 아버지가 계략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키고, 단락3에서 비범한 관원이 난제를 해결하여 상황을 역전시킴으로써 단락4에 이르러 아버지의 의도대로 결말이 맺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이야기 구조는 속고-속이기 구조에 범인찾기 구조가 결합하여 이뤄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수성은 속임의 이야기와 범인 찾는 이야기 간의 관계가 긴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이야기 모두 속임이라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속임의 이야기는 서사의 주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을 사용한다. 속임을 행함으로써 성적욕망, 금전, 경쟁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익을 얻으면서 이야기가 종결되면 속임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속임을 당한 자가 이 상황을 문제 삼게 되면 이야기는 주동자가 취한 이익의 종류에 관한 사회적 규범 문제가 발생한다. 속임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숨긴 진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를 드러내는 것이 관원의 역할이다. 그리고 관원이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 범인 찾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결국 속임 이야기가 다음 단계로 확장하면 범인찾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는 이러한 두 이야기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는 데 구조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두 이야기 구조가 교직하여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전승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의 하나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줄거리가 서사전개가 복잡하지 않게 단일하며, 향유자들의 보편적인 사유범위 내에서 용인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와 같이 구조가 이

중적이라는 것은 서사전개가 그만큼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요소가 한문 문장 해석원리라는 다분히 지식인에 적합한 것이다. 한문해석을 못하면 이야기를 즐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사유범위라기보다는 지식인들로 향유자 층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한문지식을 소유한 향유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전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 5. 상속에 담긴 의미

전술한 바와 같은 구조적인 의미와 함께 이 이야기가 상속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문화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생기고 일부일처제로 혈통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가 생긴 후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혈육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작게는 몇몇 물건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왕권)에 이르기까지 유산의 종류는 다양했으며, 유산의 종류는 그 자체로 사회적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상속을 원활하게 지속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이유다.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는 이러한 상속에 관한 이야기이다. 정확하게는 상속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이다. 각편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은 유서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즉,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는가가 유서해석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모든 각편은 첩자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후계자를 드러내는 주체는 첩자 자신(자료1.)과 관원(자료2.~7.)으로 대별된다. 자료4.는

관원의 딸이지만 그녀는 관원의 대리인이고, 서사적인 역할은 동일하므로 관원과 동일한 인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첩자는 아버지가 후계자로 정한 인물이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성장하는 숨겨진 인물이다. 자료1.에 서는 숨겨진 인물이 성장하여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단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가 않다.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의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리가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일곱 모난 돌 위의 소나무 밑에 물건을 숨겨두었다고 말해주어라.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내 아들이다. 유리가 이 말을 듣고 산과 계곡을 다니며 그것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에 마루에 있는데, 주춧돌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듯 하였다. 나아가 살펴보니 주춧돌이 일곱 모였다. 이에 기둥 아래를 뒤져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얻었다.汝若生男子, 則言我有遺物, 藏在七稜石上松下. 若能得此者, 乃吾子也. 類利聞之, 乃往山谷索之, 不得, 倦而還. 一旦在堂上, 聞柱礎間若有聲. 就而見之, 礎石有七稜. 乃搜於柱下, 得斷劍一段

(『三國史記』, 卷13 高句麗 本紀 第一)

유리 역시 어려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한다. 감춰진 후계자인 것이다. 그는 성장한 후 주변 사람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 주몽이 남겨놓은 수수께끼에 도전한다. 처음에는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에 따라서 일곱 모난 돌 위에 있는 소나무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다닌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으로는 주몽이 설치한 속임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일곱 모난 돌 위의 소나무가 주춧돌과 기둥

을 묘사한 것임을 간과한다. 주몽이 속임의 주동자라면 유리는 진실을 드러내 속임을 파괴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결국 주몽은 혈통과 함께 자신이 설치한 속임을 깨뜨릴 능력, 즉 자신을 초월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를 아들(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리의 모습과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의 자료1.에 등장하는 첩자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하게 읽힌다. 즉, 첩자 역시 숨겨진 후계자이고, 아버지가 설치한 속임을 간과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가 이룬 업적을 계승하게 된다. 두 이야기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료 1.의 첩자는 혈통과 능력 두 가지를 겸비한 인물로 신화적인 면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다른 자료들은 모두 관원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첩자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질 못한다. 그러나 관원에 의해 혈통을 인정받으면서 후계자로서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들 자료에서는 속임을 설정하는 자와 진실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그 결과 혜택을 얻는 자가 모두 제각각이다. 일반적인 속임의 이야기에서는 속임을 설정하는 자와 이익을 얻는 자가 동일인물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이 이야기가 내포한 핵심적인 관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두 인물이 아닌 동일한 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온전히 전해진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뤄놓은 모든 것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대의 이념, 가치, 규범 등이 시간의 간극을 넘어 전승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후계자를 통해 자신의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행위

가 상속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아버지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代代傳承이라는 수단을 통해 영원성을 확보하게 된다. 결국 상속은 영원히 살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이 변형된 결과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갖는 상속이 가능하다면 그 아들이 꼭 적자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다. 어떤 사정이 있든 내 피를 이은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의 각편 대부분은 극단적으로 친자만을 중시하는 관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피를 이은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은 이 이야기의 향유자들이 상속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즉,嫡子가 없을 때 그 대안으로 양자를 선택한다. 양자는 친족 중에서 선택하며 그 권리나 책임 등이 친자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후처를 들여서 첩자를 낳는 것보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양자에게는 生父라는 존재가 있다. 生父와 義父가 병존하는 상황은 양자가 두 아버지를 섬겨야하는 불안함을 내포한다. 의부는 생부보다 연장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부에게 자신의 죽을 다음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養子를 통한 상속으로는 자신의 것이 온전하리라는 확신을 갖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양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향유자들은 친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에는 신화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혈통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계승자가 된다는 관념과 함께 혈통만으로 계승자가 된다는 관념이 동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첩자에게는 신화적인 영웅의 면모와 단순한 상속자의 면모가 동시에 투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첩자의 모습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면서 다양한 시대의 관념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 6. 결론

상속을 둘러싼 갈등 중 妾子와 嫡女의 갈등은 흔하지는 않은 사례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판결집인 『의옥집』과 『절옥귀감』과 같은 기록을 토대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그 갈등의 역사는 천 년을 넘는 것이었다. 첩자와 적녀의 갈등은 두 갈래로 나타났다. 첫째는 적녀가 첩자를 무고하는 유형이었고, 둘째는 첩자가 재판으로 재산을 되찾는 유형이었다. 전자는 우리나라에 이른 시기에 소개됐으나 구전이나 문헌으로 재생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개화기에 이르러 중국에서 개작된 백화소설이 번안되면서 번안소설로 유통되었다. 둘째 유형은 『의옥집』과 『절옥귀감』의 기록이 풍몽룡의 『지낭』에 기록되고, 이 기록이 그대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기록된다. 문헌으로 전승되는 한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전되면서 <七十生男非吾子> 이야기를 형성하였다.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는 현재까지 7편이 조사되었으며 그 분포는 전국적이었다. 각편이 다양하여 서사적인 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서 전승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공통 서사는 네 단계로 다음과 같다: 1. 늙은 아버지가 獨子인 첩의 아들에게 유산을 전하고 싶다. 2. 사위에게 조작된 유서를 주어 사위가 유산을 지키게 한다. 3. 아들이 성장한 후 제기된 소송을 관원(또는 아들)이 슬기롭게 해결한다. 4. 유산이 妾子에게 전해진다.

이러한 서사단락은 속임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아버지가 속임을 구사하고 그가 설정해 놓은 속임수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다른 속임의 이야기와 달리 속임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관원이다. 이 과정에서 범인찾는 이야기의 구조가 개입한다. 속임의 이야기와 범인 찾는 이야기가 공존하는 것이 이 이야기 구

조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두 이야기가 구조적으로 긴밀하며, 속임의 이야기가 범인찾는 이야기로 확장함을 확인하였다.

<칠십생남비오자>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후계자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후계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유리왕 이야기와 같이 신화영웅적인 요소로 혈통과 능력을 모두 갖춘 자이고, 다른 하나는 혈통을 잇는 자였다. 그리고 혈통만 잇는다면 嫡庶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친자만을 중시하는 관념을 볼 수 있었다. 오랜 전승과정에서 다양한 후계자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이야기는 妾子가 최종적인 속임의 수혜자이다. 속임의 주체가 이익을 취한다는 속임 이야기의 일반적인 성격과는 달라보인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상속이므로, 첩자는 독립된 자연인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존재로 된다. 즉,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수 역, 『절옥귀감』, 소명출판, 2012, 1~576쪽.
-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47~68쪽.
- 房厚信, 馮夢龍<智囊>編纂體例探析, 安慶師範學院學報, 31卷 1期, 2012, 34~38쪽.
- 楊奉琨 校釋, 『疑獄集 折獄龜鑑 校釋』, 復旦大學, 1988, 1~438쪽.
- 오용섭, 「조선전기 간행의 『의옥집』」, 『서지학연구』 36집, 서지학회, 2007, 269~295쪽.
- 이성희, 「간부잡은 원님」,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2, 33쪽.
- 이인경,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 민속원, 2008, 1~717쪽.
- 이혜순, 「신소설 『행락도』 연구」, 『국어국문학』 84집, 국어국문학회, 1980, 102~119쪽.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87~1993.
- 임주영,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트릭서사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1~160쪽.
- 정약용, 장순법 역, 『목민심서』, 한국고전종합DB db.itkc.or.kr.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247~278쪽.
- 馮夢龍, 『智囊』, 馬松源 主編, 『馮夢龍全書』卷4, 北京:中國戲劇出版社, 2009, 1~363쪽.
- 하은하, 「부모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문학치료연구> 1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243~275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 한혜경, 「<除大尹鬼斷家私>의 서사기법」, 『중국어문논총』 47집, 2010, 301~323쪽.
- 胡士瑩, 『話本小說概論(上冊)』, 北京:中華書局, 1980, 1~755쪽.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Cultural Implications in  
*Chil-sib-saing-nam-bi-o-ja* (七十生男非吾子)

Noh, Young-keun

1. *Chil-sib-saing-nam-bi-o-ja* was formed as follow: *Ui-ok-jib*→*Jeol-ok-gui-gam-ji-nang*→*Mok-min-sim-seo*. In this process, it was transformed to oral story.

2. Story: ①Old man get a son from concubine. ②Old man cheat son-in-law and let him keep the heritage. ③After the son grow, the truth was involved by officer. ④Son got the heritage.

3. This story has trick structure and investigation structure. so we can understand the relation of both structure.

4. The thought about Successor (one is mythic character and another is bloodline) show they has extreme thought that only children of their own are important.

5. Son is substituter for his father. And in reverse, father can continue his life through his son. So, father and his son is same being. It is the meaning of inheritance

**Key Words** *Chil-sib-saing-nam-bi-o-ja*, trick, trickster, investigation, heritage, child of a concubine, son in law

논문투고일 : 2018.10.20  
심사완료일 : 2018.11.10  
게재확정일 : 2018.11.19